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2. 19.(수) 09: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소관 안건의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71-585)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주)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엘지유플러스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조사배경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주)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민원신고·접수가 ‘17년 12월 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입니다. 피심인은 1996년 7월 11일부터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이동전화로 영화,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U+비디오포털’ 서비스를 2011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심인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8년 9월 기준 1,323만 4,242명이고, U+비디오포털서비스 가입자 수는 1,130만 3,222명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위사실입니다. 피심인은 별정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별정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과금·수납 관련 업무, 서비스 품질 개선, 본인확인서비스 업무 대행, 통신과금서비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피심인은 2017년 10월 29일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총 431,660명에게 발송하면서,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별정통신가입자 중 6,910명과 피심인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담당자 실수로 현행화 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가 추출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별정통신가입자에게 발송된 피심인의 광고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은 위 그림과 같은 광고 문자를 수신한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2017년 11월 23일 이메일 및 전화로 피심인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자사의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첫째, 동의받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항입니다. 피심인은 2017년 10월 29일 자사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총 431,660명에게 발송하면서 피심인 자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1,945명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입니다. 둘째, 수탁자가 목적을 벗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인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벗어나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에게 자사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3항입니다. 셋째,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에 조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별정통신가입자가 피심인의 광고 문자를 수신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열람 요구 시에는 수탁자인 피심인도 정보통신망법 제67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피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4항입니다. <5>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 점검 후 개선을 완료하였고, 본 사고의 동기 및 목적에 있어 고의나 악의적인 부분이 없는 단순 실수였으며, 본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직접당사자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해 등 추가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PIMS 및 ISMS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등 평소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6> 시정조치(안)입니다. <가> 시정명령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이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나> 과징금 부과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피심인 자사의 가입자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매출액입니다. 피심인의 U+비디오포털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165억 4,508만 1,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피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과실로 보이는 점, 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한 2억 4,817만 6,000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익 규모는 아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 이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은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억 2,408만 8,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204만 4,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PIMS 관련 감경사례는 아래 당구장 표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위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유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 후 '19년 상반기 중 이행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 의견도 그렇고 사무처 의견도 그렇고 피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단순과실로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고내용에는 그것이 없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입장을 확정한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고문자를 보낼 때 자사 마케팅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해야 하는데 마케팅에 미동의한 사람 데이터를 관계자가 실수로 잘못 추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별정통신가입자에게도 역시 별정통신사업자가 73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900여명에게 잘못 보낸 부분이 직원의 실수라고 LGU+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우리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물론 법 위반이 있으면 관련 매출로 합시다만 이러한 위법행위로 해서 사업자가 취한 경제적 이득,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해규모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용자들의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취한 이득규모는 산정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LGU+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 문자를 보낸 작년 10월 29일 시점부터 조사하게 된 금년 9월 시점까지 해서 광고 문자를 수신한 이용자 중 41명 그리고 금액은 약 33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관련 매출액 산정할 때 지금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숫자를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을 1,945명에게 했다고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것은 미동의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중 41명이 수신됐다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광고 문자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수신을 했는데 수신한 사람 중에서 41명 정도가 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광고 문자를 어쨌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낸 숫자가 1,94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의 실수로 문자가 나갔다고 피심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를 보면 LGU+ 비교포털 매출 전체를 3개 사업연도 연평균으로 따져서 165억원을 적용했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결국은 41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했는데 또 동의하지 않은 문자 발송은 1,945명에 불과한데….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1,945명과 또 별정통신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6,900명 합하면 8,800명 정도 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8,800명이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런 산정하는 근거가 165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피심인은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165억원이라는 매출액은 '17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14년, '15년, '16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고, 이 매출액은 피심인이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관련매출액에 얼마 우리가 100분의 3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면 LGU+의 경우에는 유선전화, 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U+비디오포털과 관련되어서 마케팅을 위한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U+비디오 포털 매출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관련된 그 숫자만 한정해서 본 것은 아니고 U+비디오포털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개 이런 경우 피심인이 승복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피심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여기에서는 크게 다툼은 없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조사기간을 보니까 최초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착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것이 '17년 12월 8일입니다. 그 뒤에 바로 다음 달 올 1월부터 서면조사 KISA가 벌이고 현장조사를 우리가 나가서 했고, 사업자 의견 접수를 7월부터 해서 지금 의결로 올라오는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왜 1년씩이나 걸리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과장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들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거의 100여건 이상이고, 외국사업자들도 상당히 여러 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민원에 의해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조사하는 측면이 있어서 걸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스팸 법규 위반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금년 5월에 중앙전파관리소가 이미 한 적이 있고 저희는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외 이용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데 따른 이런 후속조치가 기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한정된 인력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선에서 조사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혹시 절차가 불필요하게 많다면 간소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아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저희가 조사 완료 후에도 목적의 이용, 그다음에 수탁사업자로서의 수탁 범위를 벗어난 이용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로펌의 법률자문도 받고, 최종적으로 법률자문관님 의견도 듣고 저희가 단순 민원사건으로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려다가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다시 현장조사 나가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위반 정도를 중대성으로 볼 때 중대하지 않고 보통으로 판단한 근거는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규모가 작다고 보신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리고 LGU+는 조사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건인데 관련 프로세스도 모두 정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피해자가 알뜰폰 가입자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뜰폰 가입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뜰폰 가입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형 이통사가 생각 없이 문자 없이 발송하는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이 건은 LGU+가 약 43만여명의 가입자에게 마케팅 관련 문자를 보내면서 동의 하지 않은, 마케팅 활용 동의에 체크하지 않은 1,945명에게 같이 보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율을 따져 보니까 0.014%입니다. 위반율이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라기보다는 직원의 실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취한 이득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피해가 경미하고 이득이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피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33만원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약 33만원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기들 말로는 33만원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LGU+의 주장으로는….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6,000만원 이상 벌금을 매긴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피심인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건수가 150여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한 사람이 민원 신고만 해도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 공무원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KISA에 접수가 되면 KISA가 조사를 하지만 이 건의 경우도 KISA에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서 KISA가 서면 조사를 했지만 결국 LGU+라는 큰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방통위가 추가로 현장조사도 나간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미한 위반사항 까지도 방통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시다.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보고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기된 민원안건으로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까지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LGU+에게 경각심을 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민원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U+의 안이한 이용자 보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스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고….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43만여명에게 보냈지만 8,800여명 외에는 적법한 것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43만명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인 것이고, 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케팅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실질적인 마케팅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디폴트 값으로 상당수 고객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발송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것이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별정통신가입자 그리고 마케팅 활용 미동의자에게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스팸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 행위가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익으로 보면 33만원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6,000여만원의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GU+가 오늘 시정조치안을 계기로 해서 단 한 사람의 고객 불편도 성심껏 대하는 이용자 보호의식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제26차 회의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단순 노출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있으면 중대성에 상관없이 전수조사 후 제재하는 방식은 행정력의 효과적인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방통위 차원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력 7명으로 많은 민원들을 대처하려면 사안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적절한 대응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에서 내년도 개인정보 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일단 LGU+ 측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 5월이라고 하는데….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아닙니다. 서울전과관리소로부터 스팸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5월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리고 방통위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LGU+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언제쯤부터 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시정완료 시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확인해 보시고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력의 문제인데 많은 언론인들이 방청하고 있는 가운데서 인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으로서 굉장히 면구스럽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인력이 태부족해서 이렇게 업무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지만 인력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상임위원들이 더 노력해서 이 부분부터 개선해야 업무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게도 미안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용자정책국이 전반적으로 조사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우리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쌓여가는 이런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조사인력을 더 늘리도록 해야겠지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영환 법률자문관

-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기왕 말 나온 김에 제도에 허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LGU+가 알뜰폰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사안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본인 인증 관련 수탁을 받았는데 이런 수탁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광고성 메일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탁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즉, 과태료도 안 되고 과징금도 안 돼서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수탁의 목적을 벗어나는, 수탁의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반법으로 돌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서 형사처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처럼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법률자문관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받지 않은 목적외 이용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로 처벌하는 규정, 그다음에 과징금·과태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알뜰통신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또는 취급·위탁을 본사 이동통신사업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보다도 수탁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더 대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만 묻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대상자가 위탁한 내용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수탁자가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보다 더 대규모 회사이고 사실상 교육 지도·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망법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시정명령만 할 수 있고 수탁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 과징금 조항 등 벌칙조항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징금 조항은 없지만 5년 이하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오늘 열람청구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자가 자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수탁자에게 열람청구를 했음에도 수탁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열람청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교육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오늘 과태료 처분 500만원이지만 사업자들에게 향후 방통위의 정책방향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앞으로 조속히 더 필요한 입법조치도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일이 자꾸 많아 집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유선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유선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유선 결합상품의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 거부·지연 등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5년 8월에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중장기 과제로서 해지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처와 사업자들 간 실무협의를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방통위가 지난 12월에 해지제한 행위 관련해서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단계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지단계 민원분석결과 해지제한 민원이 25%를 차지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내용입니다. 사업자 전환방식을 변경해서 유선상품도 번호이동과 유사하게 새로운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용자의 별도 해지신청 없이 기존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지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7월부터 4개 통신사업자(KT, LGU+, SKB, SKT)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SO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간 경쟁상황, 통신4사 시범서비스 결과 등을 반영해서 도입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대상으로는 서비스 식별 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단품과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으로 우선 도입하고, 향후 논의될 전담반을 통해 대상서비스를 최종 확정하고 가입상품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사업자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제도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사업자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기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해지방어나 해지거부 등을 막아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과 요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19년 1월부터 내년 1년 동안은 시스템 구축 방안과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그리고 비용 분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6개월 동안 시스템 구축을 한 후에 2020년 7월에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1년 7월에는 SO사업자까지 확대한 전체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방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제는 SO 이용도 한꺼번에 새로운 사업자가 다 처리해 주는 것이어서 이용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도개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었던 민원인들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위약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용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하고 나면 역시 위약금 문제는 민원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번호이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 위약금이 남아 있으면 기존 사업자가 해지 전에 위약금에 대해서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식별번호가 없는 유선상품의 경우에는 가정단위로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번호이동처럼 가입자 전환이 일어나는 등 악용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위약금도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가입자에게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사업자가 확인을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안내와 실제 이용 철회,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향후 장비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러면 위약금을 미처 인지를 못했다가 이동하고 나서 사실은 위약금이 이만큼 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 부분도 향후 전담반에서 논의해 보겠지만 이동전화 같은 경우에도 신규 가입 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프로세스상 위원님 우려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처를 면밀히 해서 제도 보완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면 우선 이동통신 번호이동의 경우에도 신규 가입할 경우에 저희가 약관을 다 읽어 봐야 하지만 약관을 고객들이 다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요금가입기간이나 요금 등 그다음에 위약금을 사전에 고객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중요사항 설명안내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속인터넷, 그다음에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 사업자 자동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고속인터넷은 셋톱박스를 회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비 회수 일정이나 위약금 안내 등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기본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고 '19년 1월부터 저희 세무 추진방향을 연구하는 전담반을 운영해서 사업자 간 세무 계약 관계라든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1년 반 정도 2020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완전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올해 방통위 업무목표가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입니다. 이번 안건은 해지제한 행위를 주요한 영업행위 수단으로 쓰고 있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방안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고한 바와 같이 해지제한 민원 비율이 작년 말에 25.4% 에서 올해 3분기 까지 24.8%로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개선이 매우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처 간 실무협의, 그리고 제도개선 연구반 회의, 또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사무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와 유사한 GPL 방식, 즉 새로운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용자가 별도의 해지신청 절차 없이 윈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훌륭한 행정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연구반 논의과정에서도 그랬고 위원장님과 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세부시행에 있어서는 갈등의 소지가 큼니다.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사나 MSO 그리고 위성방송사까지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종합유선방송사는 방송 단품이 포함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에까지 전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 단품은 제한할 것을 주장하는 등 사업자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전담반 운영과정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 간 경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통신사와 SO 사업자의 도입 시기에 대한 차등 적용,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 등 세심한 점검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방안이 사업자들의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이용자 보호 제도로 공고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조항에 GPL 방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식이지만 IPTV 쪽 모바일폰과 결합된 시장지배력이 SO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SO 쪽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득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불만이 없도록, SO 측의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장 지배력이 이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1. 의결사항

나.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18-71-586)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성욱 편성평가정책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2017년도에 실시한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6개 사업자 363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절차는 방송평가지원단의 조사·검토 후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사업군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상파TV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하락하였으며, 평가점수는 KBS1, SBS, KBS2, MBC 순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평가 순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KBS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23점 하락하여 2017년도 평가점수는 772.99점입니다. 심의규정 준수나 관계법령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감점이 있어서 총점이 하락하였습니다. SBS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62점 하락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702.20점이 되겠습니다.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등의 평가항목에서 총점 하락이 있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BS2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46점 하락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693.70점입니다. MBC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108점 하락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662.99점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수상실적이나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큰 폭의 감점으로 인해 총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BS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13점 하락하여 '17년도 방송평가 점수는 812.23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 TV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SBS의 평가점수 하락으로 대부분의 지역민방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총점은 TBC와 G1이 전년 대비해서 평가점수가 올라갔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NN과 OBS, KBC는 전년 대비해서 평가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하락요인들은 대동소이하어 심의규정 준수나 프로그램 수상실적 등에 있어서 감점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M의 경우 KBS1, SBS, MBC, KBS2 순이었으며, FM은 SBS, KBS2, MBC, KBS1 순으로 평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M과 FM 모두 1위 사업자의 변동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상파 DMB TV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MB 지상파 계열은 KBS, SBS, MBC 순이며, 비지상파 계열은 유원미디어, 한국DMB, YTN 순으로 전년 대비해서 평가순위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지상파 사업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편PP입니다. JTBC의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해서 하락하였으며, 평가점수는 TV조선, MBN, 채널A, JTBC의 순으로 전년도 평가 순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TV조선은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16점 올라가서 '17년도 평가 점수는 602.07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편성, 장애인/여성 고용비율 등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올라가서 총점이 상승하였습니다. MBN은 전년 대비해서 총점 11점이

상승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594.50점입니다. 재난방송 편성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의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23점이 올라가서 '17년도 평가점수는 593.46점입니다. JTBC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21점 하락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3개 종편사의 총점은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였지만 JTBC는 전년 대비해서 21점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17년도 평가점수는 576.22점입니다. JTBC의 하락 원인을 보면 협찬고지 및 가상광고 등의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 편성규정 준수, 관계법령 준수 등의 항목에서 감점의 폭이 확대되어 총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도PP 보고드리겠습니다. YTN, 연합뉴스TV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전년도와 평가 순위는 변경되었습니다. YTN의 경우 총점이 4점 하락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423.17점입니다. 연합뉴스TV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6점 하락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421.03점입니다. 위성방송과 MSO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CJ헬로, 현대HCN, 티브로드, CMB, 딜라이브 순이며, 딜라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MSO의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26점 상승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426.1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홈쇼핑 PP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GS SHOP, 홈앤쇼핑, 아임쇼핑, CJ오쇼핑 순이었습니다. CJ오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 간 평가점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전년 대비해서 8점이 상승하여 '17년도 평가점수 448.79 점이고 NS홈쇼핑은 총점 18점 상승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445.51점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GS SHOP은 전년 대비해서 6점이 하락하였고, 홈앤쇼핑은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31점 상승하여 '17년도 평가점수는 440.7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CJ오쇼핑은 전년 대비해서 총점이 9점 하락했는데 심의규정 준수와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평가결과는 세부 항목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평가결과를 일정비율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 점수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상파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평가조차도 다른 방송들은 오히려 좋아지거나 비슷한데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상파 중에서도 특히 광고에 의존하는 방송들이 평가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총점에 40%가 반영되니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각 방송사들이 사활을 걸고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순위가 방송사의 여러 가지 대국민 이미지나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지상파 TV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KBS, MBC, SBS가 다 심의규정, 편성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감점들이 있었던 것이 눈에 띕니다. 심의규정에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까?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제규정인데 간접광고나 형평성 문제 등 심의규정 전반에 대해 감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KBS 1TV는 자체 방송심의 제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감점이 '16년에 비해 점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감점요인이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법이나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서도 감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MBC의 경우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제규정 준수에서도 '16년 대비해서 점수가 낮아졌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상실적과 관련해서 수상실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도 점수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BS도 마찬가지로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에서 감점이 '16년에 비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상파TV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이저 방송사이고 또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의 여러 가지 심의규정, 편성규정 이런 제규정들을 지키려는 소위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점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안이한 인식을 경영진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KBS, SBS는 20점에서 60점, KBS2는 40점 하락인데 MBC는 총점이 108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MBC가 전년도 평가 순위가 2등에서 꼴찌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총점이 108점이나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다 심의 규정 위반, 편성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감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편PP들도 보면 전년도 1위였던 JTBC가 이번에 꼴찌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역시 협찬고지, 가상광고 위반건수가 엄청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이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도 많이 하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지상파와 맞먹는 수준이 된 JTBC도 이제는 그만큼 불륜이 커지면 준법의식도 같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협찬고지, 가상광고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이려고도 인기를 유지하겠다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다 점수가 떨어지는데 TV조선과 MBN은 총점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어린이 프로그램, 재난방송 편성 다 늘리고 장애인, 여성 고용 이런 평가항목에서 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니 평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평가제도가 참으로 각 방송사들에 경종을 울려주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우에 각 방송사들이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감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표철수 위원님께서 평가위원장을 맡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표철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니다. 지상파TV가 전년 대비 총점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심의규정, 그리고 편성규정 준수항목에서 감점이 많았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016년에 협찬고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찬고지 위반 건수가 많아졌고, 특히 가상광고, 간접광고 형식규제 위반 건수의 증가가 어떤 면에서는 큰 폭의 감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사후 규제, 즉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상파방송사가 협찬광고나 아니면 광고 형식 규제에 대해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지표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MBC의 큰 폭의 점수 하락은 저는 '17년도 파업의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방송사의 파업이 프로그램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광고매출 감소, 또한 편성 등 방송사의 전반적인 관리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번 평가 결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종편PP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로 보면 종편PP 4사의 편성, 내용, 운영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 '17년에 TV조선이 매우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평가결과도 기대됩니다. JTBC는 '17년에 WBC 중계로 인해 가상광고 형식규제 위반으로 큰 폭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JTBC가 광고형식 규제에 대한 준수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 간 우열을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어디가 1위, 어디가 꼴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상파방송 혹은 종편PP 같은 이런 동일그룹 내 일부 항목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최종 평가점수는 개별 방송사가 평가만점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평가 1위 달성' 이런 형식의 채널 홍보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표철수 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까지 코멘트하고 총평은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평가 결과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그리고 종편 재승인 심사에 40%가 반영되는 대단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평가의 타당성이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송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방송사 실적분에 대한 방송평가 시 적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방송내용과 편성·운영 전 분야에 걸쳐 평가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되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척도를 보면 법규준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경영혁신도 다 반영됩니다. 내용 부분에서는 KI 프로그램 질 평가, 자체프로그램 질 평가, 그리고 수상실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편성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운영 관련해서도

보면 재무의 건전성, 경영투명성 확보, 인적자원 개발투자 그리고 방송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방송평가는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과 경영 혁신까지도 다 반영됩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대부분 경영진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어떻게 보면 전임 경영진들의 방송사 운영에 대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상파들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평가점수들이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종편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편들의 평가결과는 지난 주 위원회에 보고했던 종편사들의 재승인 조건 이행 결과와도 어느 정도 부합합니다. 즉, 종편들은 나름 프로그램과 경영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금년도 평가가 내년도에 실시됩니다만 지상파방송사에 있는 분들이 이런 평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평가결과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더욱 더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런 평가결과와 연관해서 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신문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일반시청자들로부터 경영효율화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혁신, 경영혁신 더 나아가서 공적책무를 어떻게 제대로 이행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작업도 상당히 일이 많은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평가를 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방송평가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변화는 방송평가제도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방송평가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업자별로 그 사업자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내용이나 편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자들이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BC의 감점이 크다는 것 중 상당 부분은 심의규정 위반도 있지만 프로그램 수상실적이 MBC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이 문제가 돼서 감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종편에서 재난방송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종편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도 좋은 시간대에 편성하는 이런 노력으로 인해 종편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송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재난방송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라디오가 재난방송의 주력매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KBS1 라디오나 MBC AM 라디오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에서 전부 다 감점을 받았습시다. 앞으로는 지상파 라디오에서 제일 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재난방송으로 가장 등급이 제일 높은 단위로 평가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각 방송사업자들이 이번 방송평가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대로 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방송평가제도,

방송평가규칙을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대비를 잘해야 그야말로 좋은 방송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내년부터 평가가 바뀐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훨씬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평가결과를 보고 방송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상파들은 좀 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고, 종편들은 나아지고 있지만 처음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방송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다 됐다’ 이런 식의 자만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평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1. 보고사항

나. 2018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 “2018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성욱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사업자는 총 77개 사업자 144개 채널이고,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각 72개씩 나누어서 평가하였습니다.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PP 중에서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300일) 이상 운영 채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 허가나 승인사업자나 동일 법인으로 운영되어 회계분리가 어렵거나 공공채널,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이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종교나 성인채널은 제외하였습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송신·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을 가 그룹으로 분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군소PP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1년입니다. 평가항목은 자원·프로세스·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평가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대비 평가 개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분야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공급분야는 A그룹의 경우 시의성 있는 경제정보나 운동경기, 게임

등 현장중계 방식으로 제공되는 채널을 A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공급분야 B는 오락적 예능프로그램 또는 극적(劇的) 포맷을 갖는 프로그램을 주로 B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으며, 공급분야 C는 교양물 등을 제공하는 채널을 C그룹으로 분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과 평가 세부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작비 비중 중 제작비 증가분을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시청자 선호도 평가항목도 신설하였으며, 신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변경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가 그룹 72개 채널 중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은 모두 15개 채널로 A분야에서는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등 6개 채널이 매우우수를 받았습니다. B분야에서는 DIA TV, MBC에브리원 등 6개 채널이 매우우수를 받았으며, C분야에서는 온스타일이, 투니버스 등 3개 채널이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등급은 20개 채널로 A분야에서는 JTBC GOLF, SBS CNBC 등 3개 채널, B분야에서는 수퍼액션, 코미디TV 등 12개 채널, C분야에서는 중화TV 등 5개 채널이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그룹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이 15개 채널로 A분야에서는 바둑TV, 서울경제TV SEN 등 7개 채널이, 그리고 B분야에서는 애니원, CNTV 등 4개 채널이, C분야에서는 마운틴TV 등 4개 매우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우수등급은 22개 채널로 A분야에서는 토마토TV 등 10개 채널이 B분야에서는 가요TV 등 6개 채널이 우수등급을 받았고, C분야에서 복지TV 등 6개 채널이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총점 기준 등급별 평가결과는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완료하면 평가결과는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총점 1,000점을 기준으로 가 그룹과 나 그룹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평가 대상에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 등록PP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 PP 평가 결과는 SO에서 론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PP들에게는 거의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인데 또 많은 채널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세분해서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표철수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번에는 전년도에 바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습니다. 세부평가 기준도 바꾸었고, 그것은 보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 그룹, 나 그룹으로만 분리해서 144개 채널을 대규모냐, 아니면 중소규모냐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억울한 PP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채널이라도 제작의욕이 왕성하고

또 창의력 있는 군소채널들이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경쟁에서 잘 갖추어진 채널에 밀립니다. 그래서 공급분야 장르별로 A, B, C로 나누어서 세분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중계 스포츠는 공급분야 A그룹, 오락·예능은 B그룹, 교양·취미는 C그룹으로 나누었더니 만족을 많이 하고, 또 군소채널에 대해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우수상 이렇게 방송대상에서 주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A그룹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B, C그룹에서 각각 최고점수가 나와서 매우우수 채널로 선정되어서 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N은 요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점수가 압도적인 1위로 B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서 802점이 나와서 1등이 됐고, 또 나 그룹에서도 보면 한국낚시채널이 공급 C분야인데도 770점을 받아서 역시 가장 우수한 매우우수로 내년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록PP의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서 PP의 전문성, 그리고 제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방식을 개선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자체제작을 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공급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결국 제작역량과 성과가 다른 전문PP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올해 평가결과 가 그룹 1위인 tvN 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과 평가 시청률 경쟁을 벌일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그룹 1위인 FTV는 올해까지 6년 연속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낚시전문 프로그램이지만 낚시 인구의 증가에 힘입어서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히 제작비, 신규 콘텐츠 제작, 시청자 선호도 평가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방송콘텐츠에 투자하는 전문PP의 우수한 사례가 아닌가 여겨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서 다른 PP들도 이런 선의의 경쟁에 조금 더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디테일하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 것은 말하자면 기회의 균등이라고 할까, 기회의 합리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결국은 CP(Content Provider)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회를 통해 열악한 사업자들에게도 그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숫자가 적어졌는데 전체 콘텐츠를 생산하는 PP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하면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가

콘텐츠 제작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 그 전에 2개로 나누다가 지금 분야를 3개로 나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나누어도 평가하기 쉽지 않겠지만, 또 대상이 너무 적어져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공급분야 장르를 세분화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으로도 상당히 평가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SO들이 참조하는데, 또 채널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기관이 선정하는데 좋은 참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전과는 관련이 없지만 공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강릉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여행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중독으로 3명의 학생이 숨지고 지금 나머지 학생들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현지에 가 있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 대상으로 취재가 과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지에서도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또 서울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상황 점검회의를 합니다.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바로 현장에 상황본부를 설치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일부 기자들이 해당 고등학생 친구들 SNS 메시지를 통해서까지 학생들의 상황, 심정을 취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친구들을 잃은 학교나 동료 학생들이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사고의 수습과 생존자들, 또 피해가족들을 생각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큰 충격 때문에 학교가 휴교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배려해서 취재과정에서 신중하게 이 사안을 다뤄 주시고, 또 세심하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사고를 당하면 과열 취재경쟁을 벌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유족 스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완전히 개인의 개인사까지 다 들춰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됩니다. 방송이 현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충격이 큼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보도준칙을 잘 만들어서 유족들이나 피해자 가족 스케치는 정말 자중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당국에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보도 침해가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송보도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재난방송에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취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세월호 때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피해가 나면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취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언론사마다 그런 것을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자협회보에 언론윤리강령 같은 것, 준칙에 보면 피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 또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보도가 오히려 더 자극이 되거나 어려움이나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7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7분 폐회 】